

(비공식 번역본)



투자청(BOI) 사무국 공고

No. Por.1/2561

제목: 사업(project) 진행 보고서 지침 결정

추진사업의(promoted project) 투자 진척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,

투자진흥법 제 11 조, 제 13 조, 제 20 조 및 제 54 조 1977 년(B.E.2520)의 규정에 따라 투자청 사무국은(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) 투자청(BOI)의 승인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:

1. 투자청 사무국 공고 2005 년(B.E.2548)1 월 18 일자 No. Por. 1/2548 1 항 제목: 기계수입기간 및 운용 시작 승인을 폐지한다.

2. 추진사업자는 사무국(Office)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진행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 보고서는 사업추진증명서(promotion certificate) 발급일 부터 완전운영허가(full operation permit) 접수일 까지 매년 2 월과 7 월에 작성하여야 한다. 이와 관련하여 2 월 또는 7 월에 사업추진증명서가 발행된 사업자는 다음 보고 월(2 월 또는 7 월)에 사업진행 상황을 최초로 보고한다.

3. 본 공고가 발효되기 전에 사업추진증명서가(promotion certificate) 발급되고 사무국으로부터 완전운영허가를(full operation permit) 받지 못한 사업은(project) 2018 년(B.E.2561) 7 월부터 완전운영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4. 추진되는 사업(originally promoted project)의 사업추진증명서(promotion certificate)에 의거하여 조건이 적용되는 “사업추진증명서 발급일 부터 6 개월,1 년 및 2 년이 경과한 후에 사업운영 확인을 사무국에 통보한다.”는 조건은 폐지하고, 이 공고에 따라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5. 투자추진사업자가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서 조건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, 사무국은 사업추진증명서(promotion certificate)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정지하여야 한다. 투자추진사업자가 연속적으로 2 회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사업추진증명서에 따른 권리 및 혜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.

6. 본 공고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청(BOI) 사무총장이

최종 결정을 내린다.

이 공고는 현재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018년 1월 8일 공고

Ms. Duangjai Asawachintachit
Ms. 두앙자이 아사와친타친
투자청(BOI) 사무총장